

[서식 예] 지급명령신청서(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)

지급명령신청

채권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

청구금액: 금 5,000,000원

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아 래

금 원 독촉절차비용

내 역



 금
 원
 인
 지
 대

 금
 원
 송
 달
 료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○○. ○. ○. 금 5,000,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○○. ○, 이자는 월 1%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 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〇〇. 〇. 〇〇.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2%(계산의 편의상 월 1%를 연단위로 환산함)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,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지불각서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당 사 자 표 시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

청구금액: 금 5,000,000원

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아 래

금 원 독촉절차비용

내 역

금 원 인 지 대

금 원 송달료

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○○. ○. ○. 금 5,000,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○○. ○, 이자는 월 1%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 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〇〇. 〇. 〇〇.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2%(계산의 편의상 월 1%를 연단위로 환산함)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,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관 련 법 규	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
불복절차 및 기 간	(신청인(채권자)) ·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). {피신청인(채무자)} ·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(민사소송법 제470조) ·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70조)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의 의	금전, 그밖에 대체물(代替物)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 령을 할 수 있음. 다만,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민사소송법 제462조).		
지 급 명 령 과 집 행(민사집 행법 제58조)	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 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.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.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, 전에 내어준 지급명 령 정본을 독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위		

- ※ (1)관할법원(민사소송법 제463조, 제7조 내지 제9조, 제12조, 제18조)
 - 가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
 - 나.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



- 다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라. 어음·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
- 마.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
- 바.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. 선박 또는 항 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.